

# 감정평가서

건명	우연년 소유물건(2025타경867)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서번호	250417-07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 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권순식

감정평가액	이억이천사백구십이만구천육백팔십원정 (₩224,929,68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최상욱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우언년 (2025타경867)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5.08	2025.05.07 ~ 2025.05.08	2025.05.09	
감정 평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02	토지	102	1,730,000	176,460,000
	건물	119.29	건물	119.29	-	46,849,680
	제시외건물	(25)	제시외건물	25	-	1,620,000
<b>합계</b>						₩224,929,68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 평가개요

### 1. 위치 및 평가목적

본건 기호(1)토지 및 기호2(가)(나)건물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소재 '대구북비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단독주택)으로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임.

### 2. 기준시점 및 가격조사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의거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5월 08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격조사일은 2025년 05월 07일~ 08일임.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에 관한 조건

1)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항에 의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당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한 조건: 별도 조건없음.

### 4. 평가대상 물건

1) 토지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 8	대	102	준주거	이언년	-

2) 건물

기호	소재지	구조	층수	주용도	면적 (㎡)	사용 승인일	비고
2(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 8위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단독주택 2층: 단독주택	1층: 62.82 2층: 55.47	1989. 06.24	-
2(나)	"	세멘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	1989. 06.24	-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II. 평가방법

### 1. 부동산(토지, 건물 복합부동산)의 일반적 평가방법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2조」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 등에 의거할 때 감정평가는 복합부동산에 대한 인근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산출하는 비교방식, 대상 복합부동산의 조성, 건축원가 등에 의거한 원가방식, 대상부동산의 장래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수익방식 등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시산가액 조정절차를 거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함이 이론적 일반평가방식임.
- 2) 그러나 위의 평가방식중 거래사례(복합부동산)에 의한 비교방식은 동종, 유사의 복합부동산의 거래사례 선택이 어렵고 또한 비준에 자의성이 개제되는 등의 한계가 있으며, 장래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한 수익방식은 장래 수익추정의 어려움과 환원방식 및 환원이율 적용의 한계가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시산가액 조정절차의 현실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므로 본건 복합 부동산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 평가 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기타 합리성 검토포함), 건물의 경우 원가법에 의거 접근함이 타당함.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 1. 21.>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21.>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1.>

## 2. 본건 부동산 평가방식의 적용

### 1) 본건 토지의 평가방법

본건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감정평가실무기준」 등에 의거 인근지역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 및 당해 토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과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비교방식 중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한 시산가액과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본건 건물의 평가방법

건축원가 등에 의거한 원가방식이 타당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에 의한 구조, 사용자재, 용도와 시공정도, 부대설비, 관리상태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현상(관리상태, 증축여부 등)등을 고려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3) 제시외건물의 평가방법

제시외의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용도와 시공정도, 부대설비, 관리상태 등 제반사항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현상(관리상태 등)등을 고려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 III.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 토지의 현황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비고
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8	대	102	주거용 건부지	준주거	세로 (불)	정방형 평지	-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정산식

$$\text{비교표준지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 \times \text{그 밖의 요인보정} = \text{시산가액}$$

2) 비교표준지 선정

(1) 공시지가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2025.01.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서구 비산동 919-7	대	100.60	단독	준주거	정비된 주택지대	세로 (불)	정방형 평지	729,000	-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면서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등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의 상관관계가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상기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3) 시점수정

(1) 자가변동률

행정구역	용도지역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변동률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약 0.229%(1.00229)	2025.01.01 ~ 2025.03.31 : 0.154 2025.03.01 ~ 2025.03.31 : 0.061 $(1 + 0.00154) * (1 + 0.00061 * 38/31) \approx 1.00229$

※용도지역별(국토교통부고시) 자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적용기간은 2025.01.01.~ 2025.05.08.까지이고 04월이후 지가 미고시분은 전월 지가고시분을 연장 적용함.

(2) 시점수정치 적용

생산자물가지수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토지의 지가 변동사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자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 적용함.

4)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 유사함.(1.00)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5) 개별요인 비교

### (1) 주거지대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건	비교 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구조 등의 상태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상가와의 접근성,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환경조건	일조등,자연환경,인근환경,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위험 및 혐오시설 등
획지조건	면적,접면너비,깊이,형상,방위,고저등,접면도로의 상태
행정조건	용도지역,지구,구역등 행정상의 규제,기타규제 등
기타조건	장래의 동향,기타

### (2) 개별요인 비교내용

기호	비교 표준지 (일련 번호)	비교항목							개별요인 비교내용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 율	
1	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표준지(가)와 전반적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함

## 6) 그 밖의 요인보정

### (1) 그 밖의 요인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보정이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을,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제외한 기타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준시점당시 인근 실거래가격, 평가선례, 호가수준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적정시세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5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교통부정30241- 36538), 대법원관련판례(2003다38207판결등) 등의 취지에 따라 필요함.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표준지 인근 평가선례 검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평가금액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비고
가	서구 비산동 887-*	대	준주거 (주거기타)	2,170,000	시가평가/ 2023.09.11	표준지(가)대비 가로조건 등에서 다소 우세한 토지임
나	서구 비산동 909-*	대	준주거 (단독)	1,500,000	경매평가/ 2023.09.07	표준지(가)와 전반적 개별요인 유사한 토지임
다	서구 비산동 913-*	대	준주거 (단독)	1,500,000	경매평가/ 2024.05.30	표준지(가)와 전반적 개별요인 유사한 토지임
라	서구 비산동 921-*	대	준주거 (단독)	1,730,000	담보평가/ 2024.10.04	표준지(가)와 전반적 개별요인 유사한 토지임

(3) 표준지 인근 호가수준 등에 의한 적정지가 수준

표준지(가)주변 토지의 실거래가 파악 및 지역탐문 등에 의거할 때 표준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변 준주거지역내 주거용건부지의 지가수준은 해당 토지의 가로 및 접근조건과 면적, 형태 등 획지조건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1,500,000원/㎡~ @1,800,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4) 평가선례에 의한 표준지의 그 밖의 요인보정치 적용 검토

① 평가선례중 표준지와 인접하여 비교성이 있으며 또한 당시의 시가반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일련번호(라)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보정치 적용을 검토함.

② 검토방법

평가선례기준 기준시점당시 표준지의 가격/표준지의 기준시점당시가격 = 격차율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③ 검토내용  
<표준지(가)>

구분	소재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격차율
선례(라)기준 기준시점당시 표준지가격	서구 비산동 921-*	1,730,000	1.00	1.00348	1.00	1.000	1,736,020	약 2.376 배
표준지의 기준시점 당시가격	서구 비산동 919-7	729,000	1.00	1.00229	1.00	1.00	730,669	

※특이한 사정보정요인 없음.(1.00)

※선례기준 시점수정: 2024.10.04.~2025.05.08.(대구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지가변동을)

※선례기준 표준지의 지역요인 비교: 상호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유사함.(1.00)

※선례기준 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비교
개별요인 비교내용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
표준지(가)는 선례(라)와 전반적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함								

(5) 표준지의 그 밖의 요인보정치 결정

표준지 인근 평가선례와 인근 호가수준 및 평가선례 기준 그 밖의 요인보정치 적용예 시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표준지가격 대비 적정시세가 다소 높아 그 차이 보정을 위해 그 밖의 요인으로 상향보정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건 표준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상향보정 적용함이 타당시됨.

표준지 일련번호	표준지 소재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
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9-7	2.37	-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의 결정

기호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가 변동을)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산정 가액 (원/㎡)	시산 가액 (원/㎡)	비교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							
1	가	729,000	1.00229	1.00	1.000	2.37	1,731,686	1,730,000	-

※시산가액은 1,000단위 이하에서 반올림 적용하였음.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산정산식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비교} \times \text{개별요인 비교} = \text{시산가액}$$

#### 2)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 (1)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사유 (출처)	비고
가	서구 비산동 885-*	141.4	대	준주거 (단독)	1,676,096	2023.03.29	실거래 (국토부 실거래가)	-

##### (2) 선정 및 그 사유

감정평가 대상 토지 인근지역에 위치하면서 용도지역, 주위환경,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 지세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의 상관관계가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사례 중 거래의 신뢰성이 있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위의 사례(가)를 선정하였음.

#### 3) 사정보정

위 거래사례는 당사자간 정상적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바 특이한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  
(1.00)

#### 4) 시점수정

##### (1) 지가변동률

행정구역	용도지역	거래일로부터 기준시점 까지의 변동률	비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거지역	약 0.763%(1.00763)	$(1 - 0.00109 * 3/31) * (1 - 0.00042)$ $) * (1 - 0.00019) * (1 - 0.00020)$ $) * (1 - 0.00018) * (1 - 0.00016)$ $) * (1 - 0.00017) * (1 - 0.00010)$ $) * (1 + 0.00017) * (1 + 0.00026)$ $) * (1 + 0.00643) * (1 + 0.00154)$ $) * (1 + 0.00061 * 38/31)$ $\approx 1.00763$

※용도지역별(국토교통부고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적용기간은 2023.03.29.~ 2025.05.08.까지이고 04월이후 지가 미고시분은 전월 지가고시분을 연장 적용함.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시점수정치 적용

생산자물가지수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토지의 지가변동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 적용함.

5)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거래사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지역에 위치하는 바 제반 지역요인 유사함. (1.00)

6) 개별요인 비교

(1) 주거지대 개별요인 비교항목

위와 같음.

(2) 개별요인 비교내용

기호	거래 사례 (일련 번호)	비교항목							개별요인 비교내용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격차 율	
1	가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거래사례(가)와 전반적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가격 (원/㎡)	사정 보정	시점수정 (지가 변동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산정 가액 (원/㎡)	시산 가액 (원/㎡)	비고
1	1,676,096	1.00	1.00763	1.00	1.000	1,688,884	1,690,000	-

**4.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그 의견**

1) 감정평가규칙 제14조 제1항 등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동 규칙 제 11조 제2호에 따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유사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됨으로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을 본건 평가액으로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원/㎡)	적용(결정) 감정평가액(원/㎡)	비고
1	1,730,000	1,690,000	1,730,000	-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감정평가액 결정

별첨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IV. 건물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함.

### 2. 대상건물 개요

기호	구조	면적 (㎡)	용도 (공부기준)	사용승인일	비고
2(가)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62.82 2층: 55.47	1,2층: 단독주택	1989.06.24	-
2(나)	세멘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1	변소	1989.06.24	-

※ 주요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바닥 난방설비 등.

### 3. 평가산식

$$\text{재조달원가} \times \text{감가수정}(\text{잔존년수} / \text{총내용년수}) = \text{감정평가액}$$

### 4. 재조달원가 및 내용년수의 결정

#### 1) 표준단가 검토

[ 출처: 2024.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년수
1-1-3-7	일반주택	조적조(연와)슬래브지붕	3	1,697,000	45 (40~50)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검토

설비종류	설비내역	보정단가 (원/㎡)
전기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재조달원가에 감안
위생,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재조달원가에 감안
난방설비	도시가스 바닥난방설비	재조달원가에 감안
기타설비	기타설비 등	재조달원가에 감안

## 3) 재조달원가 및 내용년수의 결정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 발간) 및 본건 건물의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정도 등을 비교하고,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 및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적용할 재조달원가 및 내용년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호	재조달원가 (원/㎡)	내용년수 (년)	비고
2(가)	980,000	50	-
2(나)	1,200,000	50	-

## 5. 건물 감정평가액(단가)의 결정

기호	재조달원가 (원/㎡)	사용 승인일	(총) 내용년수	실제 경과년수	유효 경과년수	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원/㎡)
2(가)	980,000	1989.06.24	50	35	30	20/50	392,000
2(나)	1,200,000	1989.06.24	50	35	30	20/50	480,000

※ 잔존가치율= 잔존 내용년수/(총)내용년수

※ 실제 경과년수= 물리적인 만년경과년수

※ 유효 경과년수= 물리적이 아닌 기능적, 경제적경과년수로서 본건 적용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 6. 건물 감정평가액의 결정

별첨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상기 평가선례와 인근거래사례, 인근토지의 적정 거래가격수준, 건물의 현상 등과 본건 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위의 토지평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평가액의 합계가 그 합리성이 인정됨으로 이를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결정함.

## 2. 감정평가액

1) 요약

기호	소재지	지목/구조	용도	면적 (㎡)	적용단가 (원/㎡)	평가금액 (원)	비고
1	서구 비산동 916-8	대	주거용 건부지	102	1,730,000	176,460,000	-
2(가)	위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18.29	392,000	46,369,680	-
2(나)	위지상	세멘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	480,000	480,000	-
제시외 건물(ㄱ) ~(ㄷ)	위지상	샷시조 외	다용도실 외	25	-	1,620,000	-
합계						224,929,680	-

2) 상세: 별첨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 참조.

## VI. 기타(그 밖의 사항)

없음.

#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8	대	준주거	102	102	1,730,000	176,460,000	
2 (가)	"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64길 14-7	916-8 위지상	단독주택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2층	62.82 55.47	118.29	392,000	46,369,680	980,000 *20/50, 관찰감가
2 (나)	"	"	변소	세멘부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1	1	480,000	480,000	1,200,000 *20/50, 관찰감가
ㄱ	<제시외 건물> "	916-8 위지상	다용도실	샷시조	(11.1)	11.1	60,000	666,000	관찰감가
ㄴ	"	"	다용도실	샷시조	(11.9)	11.9	60,000	714,000	관찰감가
ㄷ	"	"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2)	2	120,000	240,000	관찰감가, 옥상소재
<b>합 계</b>								<b>₩224,929,680.-</b>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토지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소재 '대구북비산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도로변 상가지대 및 후면의 정비된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토지까지 일반차량 등 접근 가능하며 시가지내 정비된 주택지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을 포함한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시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토지는 정방형의 토지로서 인근지대와 평탄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토지 토지는 남서측으로 약 3미터 가량의 골목도로에 접하고 있음.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
- 2) 기 타: 없음.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기호 2(가):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1989.06.24  
 외벽: 치장벽돌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바닥: 장판지 및 타일 마감  
 천정: 천정지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 2(나): 시멘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1989.06.24  
 외벽: 타일 마감 등  
 내벽: 몰탈 마감.

## (2) 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  
 기호2(나): 변소로 이용중임

## (3) 설비내역

기호 2(가)(나)부분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보일러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 2(가)건물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은 제시외 건물 3동이 소재함  
 .(정상평가)

##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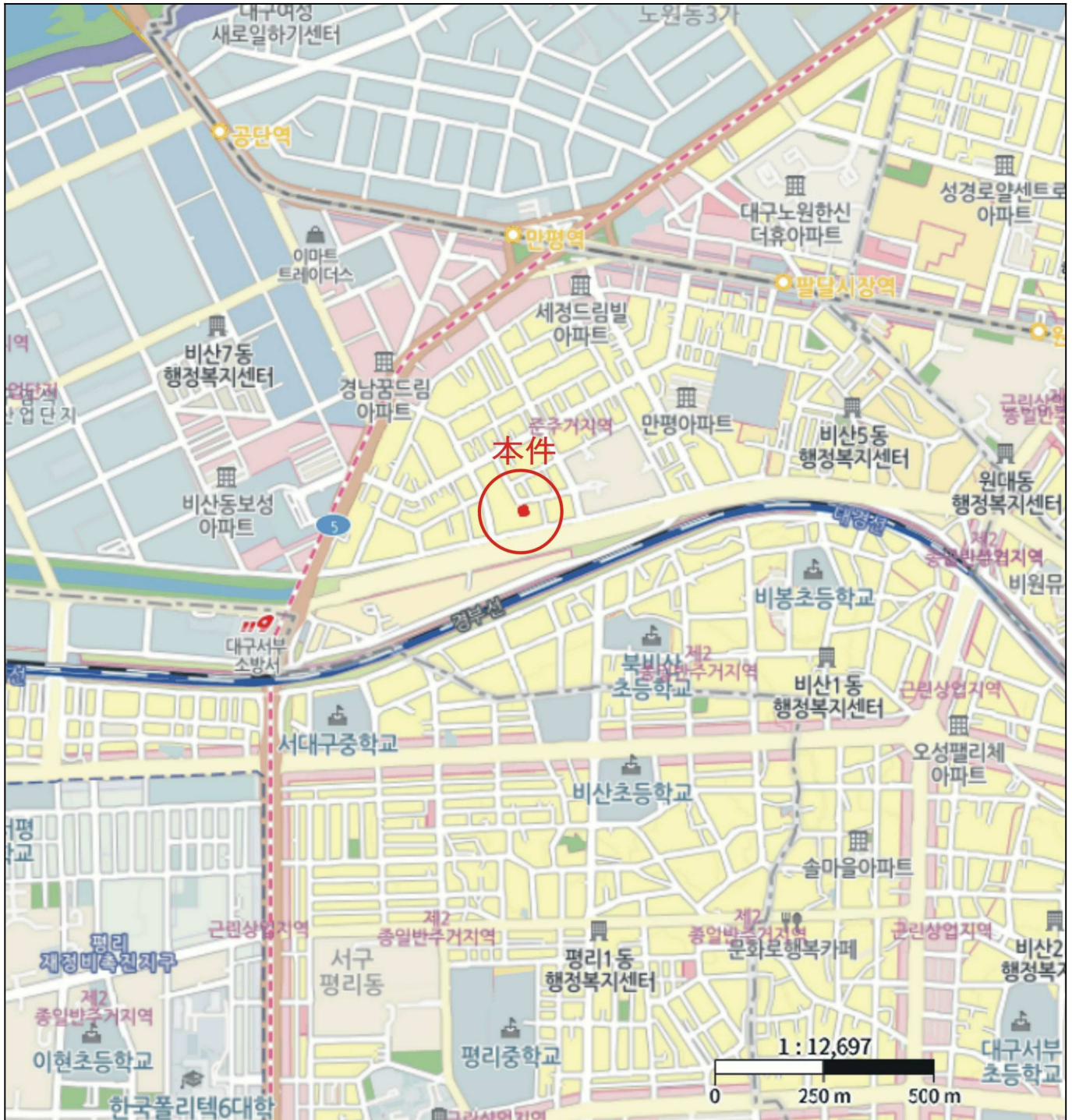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 상
- 2) 기 타: 없 음.

#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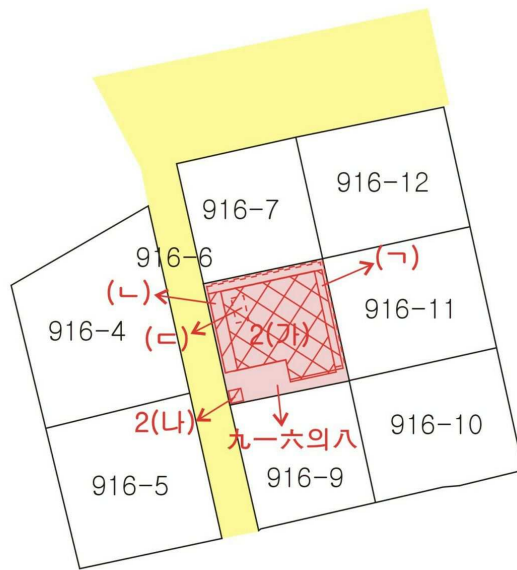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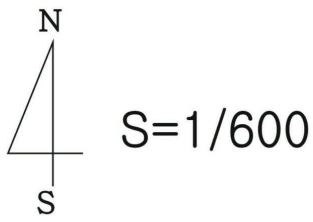
# 위치도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16-8



#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 건물개황도

S=1/300



<평가건물 면적산출근거>

2(가),2(나): 공부상면적과 실측면적이 유사하여 공부면적에 의거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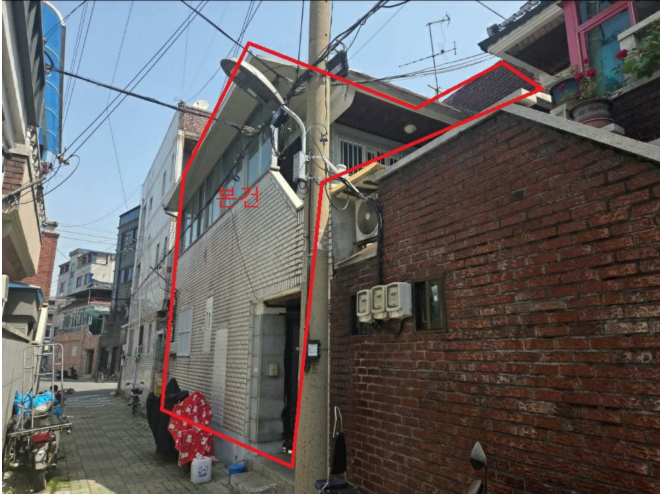
<제시외건물 면적산출근거>

(ㄱ) 샷시조(다용도실): 약 11.1㎡

(ㄴ) 샷시조(다용도실): 약 11.9㎡

(ㄷ)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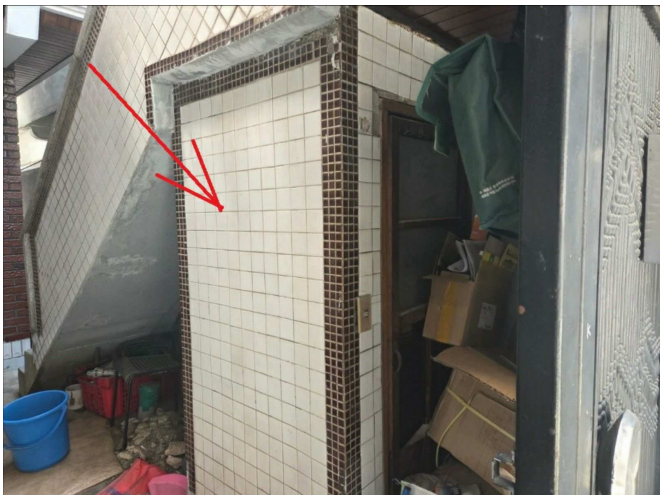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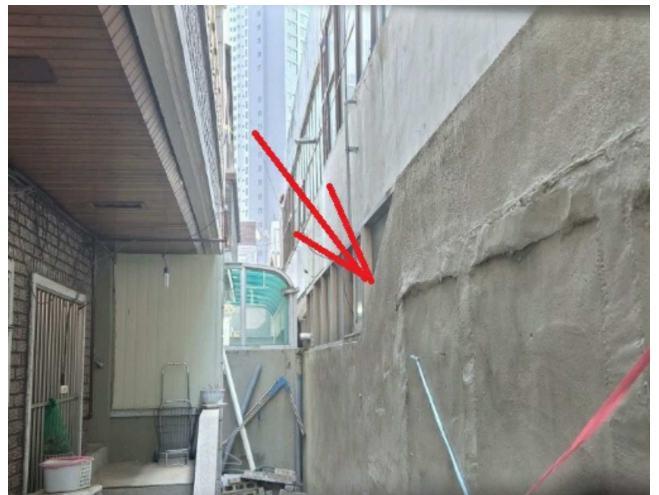
본건 토지, 건물 전경



본건 기호2(가)건물 1.2층 부분전경



본건 기호2(나)건물 전경



제시외(ㄱ)건물 일부전경

# 사 진 용 지



제시외(ㄴ)(ㄷ)건물 일부전경



본건 주변전경